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1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및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호)

나.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청소년단체”라 함은”을 ““청소년단체”란”으로 한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을 “청소년활동시설을”로, “수련시설 이용자”를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련시설을”을 “청소년활동시설을”로 한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업무) 청소년활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을 위한 수련·교류·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구활동 지원

라.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마.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바.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사.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아.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2. 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 집)

가. 청소년을 위한 수련·교류·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구활동 지원

다. 청소년의 자치 동아리 활동 지원

라.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마.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바.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사.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가. 청소년 놀이·문화·휴식 공간과 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나.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다.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 휴관일)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날을 휴관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정기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누리집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전단 중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시설 또는 공간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종전의 제6조) 중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수련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로, “취소·정지·변경 등의”를 “취소·정지·변경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3. 청소년활동시설·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고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를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을 “성별 균형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한 자”를 “인정하는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선정 또는 재계약에 관한 심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수탁자는 수련시설의”를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련시설의”를 “수탁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의”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수탁자의 의무 등)”을 “(수탁기관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는 수련시설을”을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을”로, “사용 하여서는”을 “사용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수탁자는”을 각각 “수탁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는”을 각각 “수탁기관은”으로, “수련시설의”를 각각 “청소년활동시설의”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기관은 법 제25조 등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탁기간 동안 보험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자가”를 각각 “수탁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도·검사·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

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청소년수련시설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달빛1로 227 (아름동)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조치원읍 수원지길 57	
	조치원청소년센터	조치원읍 대첩로 76 (행복누림터 3층)	
	새롬청소년센터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고운청소년센터	마음로 64 (고운동남측행복누림터 별관 2층)	
청소년이용시설	보람청소년자유공간	한누리대로 2107(보람동)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반곡로 39 (반곡동행복누림터 A동 4층)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
제3조(운영원칙)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 ---------- 청소년활동시설을 ---------- ---------- ----------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 ----------.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시민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 ---------- ---------- ---------- 청소년활동시설을 -----.
제4조(업무) 수련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업무) 청소년활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심신 단련,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1. 종합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청소년 교육 및 수련활동 지원 6.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나. 청소년을 위한 수련·교류·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구활동 지원 라.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마.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바.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사.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아.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2. 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 집) 가. 청소년을 위한 수련·교류·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구

	활동 지원 다. 청소년의 자치 동아리 활동 지원 라.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마.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바.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사.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가. 청소년 놀이·문화·휴식 공간과 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나.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다.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신 설>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제7조(사용허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시설 또는 공간을 사용하려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료) ----------. 제6조(청소년활동시설 휴관일)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날을 휴관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정기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신 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누리집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 ---------- ---------- 취소·정지·변경하는 등 ----------.
<신 설>	1. 감염병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2.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신 설>	3. 청소년활동시설·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 청소년활동시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고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30일 전까지 갱신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그 밖에 수련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③ ----- 청소년활동시설----------

따른다.	----.
제9조(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 성별 균형을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3. 그 밖에 ----------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개의하고----------.
⑤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⑤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선정 또는 재계약에 관한 심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② ----------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의 ----------.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수탁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의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을 ---------- --- 사용하여서는 --------.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적법한 명령	② 수탁기관은 ----------

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 청소년활동시설의 ---------- ----------.
④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비품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 ---------- ---------- ---------- ---------- --.
⑤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의 ---------- ---------- ----------.
제13조(변상 조치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 조치 등) 수탁기관 ---------- ---------- ---------- ---------- ----------.
제14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청소	제16조(보험가입) ① 수탁기관은 법 제25조 등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탁기간 동안 보험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수탁자는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위탁해지) ① ---- 수탁기관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수탁기관----------.
제16조(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련시설 운영상황 등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제18조(지도・검사・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여금 지도·감독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